

의안 번호	1741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3.(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5. 3.(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5. 14.(금)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지역체육진흥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

3.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안 제12조)
 - 구 성 : 의장, 부의장 포함 7명 이상 ~ 15명 이내(안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 포함 명시
 - 회의 등 운영 (안 제15조 ~ 제20조)
 - 위원 임기 2년, 정기회의 연1회 개최 등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 생활체육교실 강사규정 및 준용규정 삭제 (안 제8조, 제11조)

4. 근거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5. 검토의견

-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조례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